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102
----------	--------

2025. 9. 1.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위생과)
- 나. 제 안 일 : 2025. 8. 14.
- 다. 회 부 일 : 2025. 8. 18.

## 2. 제출이유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소방·전기 안전서류의 발급 곤란을 해소하고, 지정 제한 해제에 따른 시장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 서류 인정, 자문절차 도입, 행정처분 기준 조정 및 안전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지정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안전 대응력을 높이고자 제출됨.

## 3. 주요내용

- 가.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소방·전기 안전시설 확인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인정 규정 신설. 지정 유효기간 2년→3년으로 확대 연장 및 재지정 신청 시 영업장 평면도 의무 제출 규정 추가(안 제6조)

- 나. 지역 여건 및 공공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신규 지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존속기한 3년)(안 제7조의2)
-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제5호)
- 라.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위반 횟수(2회→3회) 완화와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12조)
- 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도입(안 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전기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5. 7. 10. ~ 2025. 7.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 검사확인서의 발급 곤란과 지정제한 해제에 따른 시장 혼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서류 인정, 지정자문위원회 설치,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안전 확보를 도모하려고 추진  
됨.

##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5조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의 개정은 “신청”의 주체성과 “제출”의 행위성을 구분하여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문장의 어구상 타당함.
- 안 제6조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서류 대체 인정은 지정 유효기간을 2년 →3년으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서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대체 인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나, 어떤 서류가 대체 가능한지 사전 명확성이 부족함.
-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의 자의성이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 내부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의 혼선 및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음 가능 서류의 예시 또는 별표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의2 지정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에 따라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가능함.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 조항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를 통해 의무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1)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전문가의 이해 관계성 여부와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 위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12조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인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한 것은 행정처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됨. 다만, 중대 인명사고 발생의 추가는 ‘중대한 인명사고’의 구체적 범위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연한 절차이나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춤 허용업소 재지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려운 안전 관련 서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자문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대체 서류<sup>2)</sup>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여 주민 혼선 및 행정의 자의성 확대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예시 규정 또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는 클럽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의 권리금 상승과 소음, 유흥, 민원 등의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일한 허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흥·단란주점업과의 비례 및 평등의 원칙과의 조화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됨.

---

2) 대체 서류 인정 예

- 소방안전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 전기안전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안전관리법」

-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